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구주위원회, 아일랜드 제당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880만 ECU의 제재금 부과

구주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아일랜드의 제당업자인 아일리쉬·슈가 사에 대해 EC조약 제86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하여 880만 ECU(1ECU=1.07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본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아일리쉬·슈가 사는 아일랜드에 있어서 유일의 제당업

자로서, 아일랜드 제당시장의 95%를 지배하고 있는데, 동사는 수입품이나 국내의 소규모 포장 판매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다.

(1) 아일리쉬·슈가 사는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그의 자회사인 Sugar Distributors Limited(SDL)와 함께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프랑스산 사탕의 수입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자기의 고객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프랑스산 사탕과 자사제 사탕과의 교환을 위한 제의를 하고 또한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부근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해 「국경 리베이트」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아일리쉬·슈가 사는 적어도 1985년 이후, 동사의 사탕을 Bulk에 넣어 포장하여 타가맹국에 수출하는 고객에 대해 「수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당해 리베이트율은 판매수량 및 환시세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설정하여 아일랜드 시장에서의 음료 상품을 판매하는 고객은 불리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타 가맹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체제는 EU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아일리쉬·슈가 사는 1993년 이후, Bulk 판매사탕에 관하여 아일랜드 국내의 소규모 사탕포장판매업자에 대해 격차별을 하고, 그들 업자를 ① 그 고객 및 ② 아일리쉬·슈가 사 자신과의 사이에서 경쟁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불리한 지위에 있으며, 또한 아일리쉬·슈가 사는 특정의 도매업자, 식품소매업자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받는 아일리쉬·슈가 사의 제품구입량을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의 경쟁사업자는 당해시장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2. 아일리쉬·슈가 사는 상기 위반행위를 통해서 아일랜드에 있어서 사탕의 소매가격 및 국내 소비용 공장도가격을 타 가맹국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구주위원회는 제재금의 결정에 임하여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으며, 수회에 걸쳐 구주재판소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본건 위반행위가 악질적임을 중시하고 있다.

역시 아일리쉬·슈가 사측은 본건 결정을 불복하고 구주 제1심 재판소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97. 4. 14. 구주위원회 발표
(공정취인위원회 사무총국 관방국제과)

구주위원회, 합병규칙에 따라 8개항의 부적합 판결

- 네덜란드의 완구판매의 유력 사업자에 의한 도이사라스 협지법인의 점포 취득에 관하여 사후의 분할을 명령 -

구주위원회는 네덜란드의 완구판매업의 큰 손인 Blokker's 사가 닷지·도이사라스 점포를 금년 2월에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네덜란드의 특정완구의 판매점 시장에서 Blokker's 사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체 시장에서 동 합병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Blokker's 사는 닷지·도이사라스로부터 취득한 점포는 자기 그룹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였다.

Blokker's 사는 네덜란드에서 큰손 소매업자의 하나이며, 주요 사업 업종은 가정용품, 완구, 기타의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동사는 완구에 관하여는 전문점포 및 가정용품의 소매점포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도이사라스는 세계 최대급의 완구 소매업자의 하나이며, 동사는 1993년 이후 네덜란드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활동을 개시하였

다. 다시 말하면, 도이사라스는 네덜란드에서 9개의 초대형 완구점을 경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6년 12월에 체결한 Blokker's 사와 도이사라스 사의 협정에 의하면 위의 도이사라스 사의 9개 점포 가운데 6개 점포가 Blokker's 사에 양도되었다. 나머지 3개 점포에 관하여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의 합병심사는 합병규칙 제22조*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의 요청으로 개시되었다. 본건의 당사회사의 매상고가 동 규칙의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심사 요청이 있기 이전에는 구주위원회는 본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고 당해조항에도 당사회사가 심사종료까지의 대기의무도 없었다.

*합병규칙 제22조제3항은 공동체 규모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가맹국 1국내에서 유효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합에 관해서 구주위원회가 당해결합이 가맹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합병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구주위원회는 본건 취득에 관련되는 시장을 「네덜란드에서 광범한 종류의 완구를 상시 판매하는 소매점포」로 확정했다. Blokker's 사는 네덜란드의 특정완구의 점포판매 시장에서 본건 취득 이전부터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동사의 판매수량은 제2위 회사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높은 시장점유율(share)을 점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구주위원회는 Blokker's 사가 타 사업자와의 경쟁상 실질적으로 유리한 자사판매 전용상품을 획득하고 있고, maker의 소매시장에의 참여에 관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gate keeper position)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상기의 사실에 의하여 구주위원회는 이번의 점포 취득은 당해 시장에서 Blokker's 사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취득은 시장 점유율에 관하여는 약간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이 명령은 당해 시장에 있어 유효한 경쟁의 회복을 보장하고 있지만 분할 process에 관해서는 도이사라스의 점포는 용이하게 제3자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동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당해 점포 및

도이사라스의 know-how가 잠재적으로 경쟁상 충분한 영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이전 Blokker's 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초대형 매장에 의한 판매가 본건 취득에 따라 가능하게 된다.

본건의 관계사업자(Blokker's 사, 닷지·도이사라스)는 이번의 분할명령에 따라 점포구입의 신청서 제출을 받아 들이지만, 실제로 가능한 한 신속히 Blokker's 사는 소유하고 있는 닷지·도이사라스의 주식을 자사 그룹으로부터 독립되게 소유하게 하고, 당해 점포를 Blokker's 사 그룹에 대한 유력한 경쟁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포를 제3자에의 매각교섭을 개시하게 된다.

한편으로 구주위원회는 Blokker's 사와 닷지·도이사라스가 ① 도이사라스의 사업상의 비밀 보호, ② 닷지·도이사라스를 유의할 경쟁사업자로 보는 관점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주식의 상호 보유를 승인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Blokker's 사는 소유한 도이사라스의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회의에 Blokker's 사 대표인 Member의 참가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 가능하다면 Blokker's 사는 제3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닷지·도이사라스로부터 취득한 점포의 구입기회를 즉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구주위원회의 결정은 네덜란드에서, 특정완구의 판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회복케 하여 네덜란드의 당해 시장에서 도이사라스의 지위가 계속될 가능성을 중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 97. 6. 29, 구주위원회 발표

EU, 보잉-맥도널 더글러스 기업결합 승인

11시간에 걸친 회의에서의 보잉 사의 양보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40억 달러 규모의 보잉-맥도널 더글러스간의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인가함으로써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전쟁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기는 7월 30일 유럽

유럽연합으로부터 최종적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주주들의 투표는 예정대로 금요일(25일)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회사들은 8월 4일에 사업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라고 보잉 사의 회장인 Phil Condit은 말하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48시간 동안 유럽연합에 대하여 맹렬히 항의를 벌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듯했다. “보잉 사와 유럽연합이 입장차이를 해소하였다니 기쁘다.”고 클린턴 대통령은 말하였다. “보잉-맥도널 더글러스간의 기업결합은 미국 방위산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효율을 증진하며 더글러스 사의 14,000명의 일자리를 보존할 것이다.”

보잉 사의 양보에는 보잉 사가 3개 미국 대형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의 “독점적 공급업체”라는 계약조항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잉 사는 회사 내에서 맥도널 더글러스 사의 상업 제트 항공기 사업부문을 별도의 법적

실체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보잉 사가 기존의 더글러스 사의 모든 고객을 보잉 항공기의 구매자로 전환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는 보잉 사에게는 불편한 점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보잉 사는 단일 상업용 항공기 사업부문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보잉 사는 또한 국방부 및 우주관련 연구계약으로부터 얻는 항공기 개발기술을 다른 구매자들에게 라이센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보잉 사는 AMR Corp.의 American Airlines, Delta Airlines 및 Continental Airlines로부터 항공기의 대량 주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69억 달러로 산정된 총 244대 항공기에 대한 주문 및 사전에 약정된 조건으로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1,300건 이상의 옵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세 항공사들은 계약조건대로 계속 보잉 사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비록 보잉 사가 지난 12월에 당해 계약이 밝혀진 이후 옹호하여 왔던 입장은 결국 포기하는 하였지만, Condit 회장은 “이는 양측이 모두 한 발 물러선 결과”인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해 기업결합 및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논쟁의 여지 있는 반트러스트 심사는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및 미국-유럽간 무역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단지 두 개의 업체-보잉 사 및 유럽의 에어버스 컨소시엄-만이 앞으로 20년 동안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독일 경제성 장관인 Guenter Rexrodt는 유럽위원회가 이에 행한 예비적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는 이미 항공우주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세계적 과정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하고 있다.

당해 기업결합 사건은 또한 미국-유럽간 무역관계의 장래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동 위원회의 잠정적 인가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최악

의 분쟁은 회피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유럽이 경제 문제에 관하여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분명히 미국의 영향력은 커짐에 반해 유럽의 영향력은 정체되는 듯한 시기에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지난 달 덴버에서의 G-7 정상회담의 주요 논제가 되었다.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보잉 사 기업결합 사건 심사는 동 위원회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스스로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훈은 논거가 훌륭하고 확고한 증거가 있다면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직도 항공기 무역에 관하여 상호대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교훈이다. 양측은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원조를 제한하기로 한 1992년 협정에 관한 논의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협정의 조건을 위반하고 있

다고 믿고 있으며, 당해 기업결합 심사에 고무되어 이러한 논의에서 위력을 과시하려 할 수도 있다.

비록 유럽연합이 보잉 사를 압박하여 미국 항공사들과의 장기 독점적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지만, 분석가들은 이를 항공사들이 당분간은 보잉 사의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American Airlines 및 Continental Airlines의 대표들은 이를 항공사들은 보잉 사와의 구매계약에서 설정된 가격, 할인폭 및 인도일자의 변경을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계약은 배타성을 제외하고는 불변이다”라고 American Airlines의 대변인은 밝혔다. 가격설정에 있어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다”고 Continental Airlines의 대변인도 말하였다. “우리는 보잉 사가 당해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American Airlines는 내년도에 98대의 항공기 주문량을 인도받기 시작할 것이다. Continental Airlines는 지난 달 35대 가량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중 최초의

5대는 내년에 인도될 것이다.

한편, Condit 회장은 당해 양보는 “0%는 아니지만, 핵심에는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국 항공사들과 독점적 공급업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독점적 공급업체 자격과 교환으로 가격 및 계약조건의 탄력성 부문에서 양보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Condit 회장은 또한 더글러스 사는 별개의 법적 실체로서 운영될 것이지만 상업적 사업부문은 독립적으로 경영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관련 논의에서의 유럽의 초기 입장은 “더글러스 사를 기업분할하라”는 것이었으며 보잉 사는 그러한 입장은 거부했다고 하였다.

보잉 사가 캘리포니아 주 풍비치에 소재한 더글러스 사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요구는 당해 논의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는 공허한 것으로 들렸는데 왜냐하면 당해 논의에 참여한 사람 모두 어떠한 업체도 구매의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더글러스 사는 보잉 사 및 에어버스 사와의 경쟁에서 미래가 없다는 논

조가 강화되었다.

비도스키 위원장·3인위원회 공동성명 및 아스케나가 위원 단독성명 형식으로 발표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7월 1일 보잉 사와 맥도널 더글라스 사의 합병 승인을 발표했는데, 동 발표는 ① 비도후스키 위원장과 3인 위원(스타이카-, 스타이크-, 바니-의 각 위원)은 공동성명에서 동 합병이 문제없다는 점과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② 아스케나가 위원은 단독성명에서 군용기 및 우주개발 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민간 기에 대해서는 반트라스트법 위반인 것으로 발표하여 동 합병에 대해 위원간의 의견이 있었다. 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비도후스키 위원장 및 3인 위원 공동성명의 개요

(1) 매스컴에서는 강력한 미국 기업이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에서, 미국은 「National cham-

pion」으로 기능하는 강력한 항공기 maker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본건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겠느냐는 억측이 훌러나오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논은 FTC에서 채용하지 않으며 우리는 반트라스트법의 집행자로 의회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경쟁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결론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2) 정확히 본건 합병은 반트라스트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합병의 당사회사 가운데 보잉 사는 대형 상용여객기의 전세계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6할을 점유하고 있으며, 맥도널 더글라스 사는 파탄기업도 아닌 직접의 경쟁자였다. 그 외에 당해 시장에는 이 두 개 항공회사 이외에 “에어

버스 인더스트리” 밖에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항공기 시장에의 참입장벽은 다른 시장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더군다나 본건 합병은 군용기 시장에서 집중을 초래하게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널

더글라스 사는 상용여객기 시장에서 기술혁신에 실패하고, 암도적 다수의 항공회사는 이미 동사가 제작한 여객기의 구입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여객기 관련 제조의 효율이 저하되어 있다. 동사는 이미 장래에 의미있는 경쟁주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은 상용여객기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4) 또한 본건 합병은 군용기 시장에 있어 경쟁에 위협을 주지 않으며, 보잉 사와 맥도널 더글라스 사도 군용전투기를 제조하고 있지만 국방총성에 의한 조달로 양사가 경합하는 분야는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사 제품이 상호 보완하는 다른 군용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5) 다만, 최근 보잉 사가 항공회사 3사와 체결한 20년에 걸친 여객기의 배타 구입계약에 관해서는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FTC는 동 장기적 배타계약의 잠재적 반경쟁적 효과를 감시해 나가기

로 하였다.

2. 아스케나가 위원의 단독성명 의 개요

(1) 본건 합병은 군용기 및 우주개발 분야에 관해서는 클레이튼 법 제7조에 의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보잉 사는 항공회사 3사와의 20년간의 배타적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건 합병과는 무관하다. 나의 동료들이 당해 계약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2) 한편, 경쟁업자가 세계에서 3사밖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과점화되어 있는 상용여객기 시장에서 제1위와 제3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합병되는 본건은 경쟁당국이 이를 금지할 것이라는 점은 십분 명백한 사안이었다. 맥도널 더글拉斯 사의 시장점유율(share)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3) 증거에 대하여 정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합병은 상

용여객기 시장에 관해서는 “1992년 수평합병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면 금지해야 할 전형적인 사례로서, 본건 합병은 클레이튼법 제7조에 위반된다. 그 외의 본건의 증거에서는 본건 합병이 갖는 반경쟁적 효과에 관하여 그것이 완전히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97. 7. 1, 24, The Wall Street Journal

관되게 방위산업의 재편을 촉구하여 왔으나, 독점의 폐해에도 배려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였다.

미국의 방위산업에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재편보다도 같은 분야의 기업이 결합하는 「수직통합」이 가속되어 왔다. 전투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사와 마틴, 마리에타 사가 결합한 록히드 마틴(로열 사의 방위부문도 매수) 사는 수직통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의 관련조직인 「국방과학위원회」의 특별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수직통합에 따라 거대화된 대기업이 그룹 내에서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일관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주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 장래 중소부품 제조업체들이 배제되어 경쟁원리가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국방부는 동 위원회의 권고에 기하여 굿먼 국방차관보(산업관련시설담당)를 중심으로 감시팀을 만들어, 저가이며 고성능인 부품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을 철저히 평가하여 대기업과의



미 국방부, 방위산업의 독점 감시-수직통합 심사 엄격화

미 국방부는 특정한 방위산업 품목에 대한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특정한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의 M&A(기업결합 및 취득)에 대하여 심사를 엄격화함과 함께 대기업이 부품조달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키로 하였다. 냉전 종결 후 미국 정부는 일

통합을 촉진토록 하였다. 특히 드 마틴 사가 감시강화의 주된 대상으로 될 공산이다. 앞으로의 M&A에 대하여서도 수직 통합의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 한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레이시온 사에 의한 휴즈 일렉트로닉스 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 양사의 방위부문의 매수계획에 대하여 방공례이다 등의 독점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냉전 이후의 국방비 삭감에 수반하여 미국 방위산업의 재편을 촉구하기 위해, 국방부는 1994년부터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독점법의 운용에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다만 잇달은 대형 기업재편이 관련 중소기업을 압박한다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잉 사와 맥도널 더글러스(MD) 사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이 항공기시장의 독점을 초래 한다며 맹렬히 반발하는 등, 독금정책 완화에의 비판도 강하여졌다.

■ 97. 6. 19, 일본경제신문

미 법무부, 회원들의 기준 준수에 관한 건설사업자 단체의 제안 승인

설인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기업과 거래하지 말도록 다른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지난 7월 30일 회원들에게 고강도 철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건설사업자단체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법무부는 당해 단체의 인증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들을 건설계약 수주 경쟁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당해 제안에 따른 행동이 당해 단체가 지향하는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평판의 향상을 가져온다면 친경쟁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후인장협회(Post-Tensioning Institute, PTI)는 압축응력을 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에 종사하는 업체 및 개인의 사업자단체로서, “비구속 사후인장(unbonded post-tensioning)” 건설기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PTI는 동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건

PTI가 선호하는 비구속 사후인장 기법은 콘크리트 내에 고강도 철사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철사의 한쪽 끝에 유압 잭을 사용하여 일정한 힘을 넣 때까지 응력을 가하고 양쪽 끝은 고정장치로 고정된다. 이 철사들은 부식방지용 코팅 내지 외장으로 싸여 있어 철사가 콘크리트에

붙는 것을 방지하며,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후에도 철사들은 인장 과정 동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비구속 사후인장 시스템의 평판을 향상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는 시스템 또는 재료 대신 동 기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PTI는 일정한 유형의 비구속 사후인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건설사업을 독자적으로 조사 및 인증하는 건설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당해 인증 프로그램은 자발적이며 PTI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인증은 PTI에 의해 시행되나, 그 실제적 집행은 PTI 및 그 회원들과는 독립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비구속 사후인장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제조, 조립, 저장 및 선적함에 따르는 복잡함 때문에 비구속 사후인장 제품의 품질에 다소의 차이가 생겨 다른 시스템과 경쟁하고자 하는 당해 산업의 노력에 영향을 미쳐 왔다. PTI는 이번 제안을 통해 이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판을 높이기를 희망

하고 있다. 모든 PTI 회원들은 제조업체 회원자격의 선결요건으로서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회원들도 계속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 사업검토절차에 따르면 단체는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초안을 반트러스트국에 제출하여 반트러스트국이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이에 대해 제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Nutrite Corp., 가격고정 유죄 시인 및 150만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

미국 법무부는 펜실베이니아 주 Allentown에 소재한 폭약 제조회사인 Nutrite Corp.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질산암모늄의 가격을 고정시키기로 공모한 데에 대해 지난 8월 8일 유죄를 시인하였으며 150만 달러의 형사벌금 지불에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질산암모늄은 상업용 폭약 제조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12개 폭약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그리고 두 명의 개인이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폭약 및 질산암모늄 산업에 대한 반트러스트 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공모에 대하여 유죄를 시인하였다. 이번의 벌금을 합하면 당해 위반으로 인해 산업 전체에 걸쳐 거의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형사벌금이 부과되었다.

피츠버그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Nutrite Corp. – 이전에는 Nitrochem Corp. 이란 이름이었음 – 및 여타 공모업체들은 가격설정 계획 및 경쟁자들의 장래의 가격설정 계획에 대하여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한다. 당해 공모는 1992년 5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반트러스트 위반자들을 법이 규정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계속 기소할 것이다”라고 반트러스트국을 담당하는 Joel I. Klein 부차관보는 밝혔다.

질산암모늄은 다른 화합물과 결합하여 폭약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광업, 건설업 및 석

유·가스 탐사업에 사용되는 ANFO(연료용 기름과 결합한 질산암모늄) 등이 있다. 폭약 및 질산암모늄의 총매출액은 미국에서 매년 10억 달러가 넘는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얻어 반트러스트국 소송1과에서 담당하였다.

서면 법 위반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기업의 최고 벌금액은 1,000만 달러, 당해 기업이 동 범죄로부터 얻은 금전상 이익의 2배액 또는 동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의 2배액 중 가장 큰 쪽이다.

■ 97. 8. 8,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미국, BA-AA간 제휴 약화에 관한 EU 의견에 동조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담당 최고인사가 지난 8월 22일 미국의 법률가들도 British Airways(BA)와 American Airlines(AA)간의 제휴에 관한 자신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고 함으로써 이들 두 항공사가 자신들의 계획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위원회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양 측이 몇몇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에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이착륙권을 경쟁항공사에 양도하라는 유럽연합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제 두 항공사는 더욱 느슨한 마케팅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제2안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본다”고 Goldman, Sachs & Co.의 Guy Kekwick는 말하였다.

미 하원 운송·하부구조 위원회의 12명의 대표들은 BA의 최고경영자인 Robert Ayling 및 당해 제휴의 주요 반대자인 Virgin Atlantic Airways의 회장 Richard Branson을 만난 후 지난 8월 22일 Van Miert와 회동하였다.

Van Miert는 대서양 항로의 수입을 공유하며 전세계에 걸쳐 일부 노선을 공동운항하고 상용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기로 한 이들 두 항공사간의 계획에 대하여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당해

제휴는 1996년 6월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경쟁항공사들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받았다.

BA 및 AA는 9월 전까지 그들의 제휴 계획을 인가하는 대가로 유럽연합이 요구한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8월 22일 밝혔다.

EU의 제안 초안은 두 항공사가 히드로 공항의 주당 350회의 이착륙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왕복항공노선 하루 25회에 해당한다. AA는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서 당해 제휴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반대의 정도가 상당함이 밝혀졌으며 이들 항공사들은 좀더 완화된 제휴계획에 대하여 은밀히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단순한 “약호 공유” 협정이라면 이들 항공사들은 관문공항에서 출발하는 각각의 노선에 자신의 편명을 붙일 수 있으며 이들 편의 좌석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97. 8. 23, 2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후지필름, 독점법 위반 없어 - 공취위 조사결과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독점상태에 있는 일본의 사진필름시장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혹은 없다」고 하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취위는 「어떠한 제조업체도 전국의 소매업자에 제품을 유통시킬 기회가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 후지필름의 유통지배에 의해 미국 이스트먼 코닥 사의 진입이 방해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다. 다만 경쟁촉진을 위해 후지필름에 대하여 판매촉진비 등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국정부 및 코닥사는 「공취위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 조사결과가 일·미간의 새로운 불씨로 될 우려도 있다.

미국정부가 특히 비판하여 온 것은 특약점의 존재였다. 공취위의 조사결과에서는 1차도매분야에서는 후지필름제품을 전매

하는 특약점 7개사가 있지만, 코닥 등 다른 회사도 똑같은 판매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 「후지필름이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면서 경쟁제한행위를 부정하였다.

더욱이 1차도매단계에서는 구매선인 제조업체가 결정되어 있으나, 2차도매·소매단계에서는 「특정 브랜드에 특화하지 않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물건을 갖출 수 있다」면서 독점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자사제품의 판매를 장려하는 리베이트도 「특약점에 적용되는 두 개의 제도일 따름으로 누진성은 낮아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후지필름으로부터 특약점의 유력거래선인 2차도매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촉진비는 「특약점의 후지필름에의 의존도를 높인다」고 하여, 영업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금기준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특약점의 채권담보를 위한 적립보증금에 대하여서도, 후지필름이 리베이트를 적립하여 고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는 다른 제조업체들과의 거래기회 감소

로 이어진다고 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번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산성은 「수입품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종래의 주장이 또다시 증명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바세프스키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공취위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반경쟁적 상관행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엄격한 강제력 있는 수단을 취하는데 실패했다」고 한 후에, 「시장진입장벽 제거의 경우에 공취위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미국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의 조사는 공취위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실시한 형태이다. 그러나 필름 통상마찰이 격화된 시기였던 만큼 조사결과는 미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답하는 형태로 되었다. 코닥사는 이번의 조사는 별도로 후지필름을 독점법 위반으로 공취위에 제소하고 있다. 제소내용 및 심사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공취위의 판단에 이번의 실태조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 97. 7. 24,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외국기업 기업결합 심사 – 일본에의 영향 중시

공정취인위원회는 외국기업끼리의 기업결합에 대하여서도 심사할 방침을 굳혔다. 국제적인 과점화에 따라 일본에서의 수입가격의 상승 등을 통하여 일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미에서는 국내기업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하여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는다는 목적으로 있다. 공취위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방법, 폐해가 있을 경우의 처분방법 등 구체적 안을 마련한 후, 빠르면 1998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독점금지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다.

구미에서는 유럽위원회가 23일에 미국의 2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맥도넬 더글러스의 기업결합을 심사, 양보를 얻어낸 후 승인한 것처럼, 외국기업끼리의 기업결합이더라도 심사를 하고 있다. 동경은행과 미쓰비시은행의 기업결합 등 일본기업의 대형 기업결합에서도 상대

국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간주되어 구미 독점금지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한편 일본의 독점법은 속지주의의 입장에서 기업결합심사 대상을 「국내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기업결합과 같이 제품이 수입되어 일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있는 경우라도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었다.

공취위는 「일본시장에 영향이 있는 이상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구미제국과 똑같이 심사할 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대책의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기업에 대하여서는 사전신고제로 하고 있으며, 구미에서도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면 외국기업에 대하여 독점당국에의 신고의무가 있으나, 공취위는 「외국기업에는 철저히 주지시키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고제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고, 공취위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조사에 착수할 생각이다.

다만 공취위가 외국에서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점의 폐해가 있는 경우에 기업결합 중지, 일본국내의 거점의 축소 등 강제력을 수반하는 배제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등 집행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또 각국에서 기업결합심사의 기준이 다르면 구미가 인정한 기업결합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마찰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국제경제법에 정통한 松下滿雄 成蹊대학 교수는 「경제의 국제화로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에 의한 자국시장에의 영향이 강하여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심사는 국제적인 조류이다. 국제마찰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국내질서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기업과 똑같이 심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97. 7. 28. 일본경제신문

**불공정거래 행위 중지
민사소송으로 가능
– 공취위 기능 보완**

일본 통산성은 불공정거래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사소제도의 창설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카르텔, 부당염매 등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가 공정취인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민사소송에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쉬워지도록 만든다. 9월부터 기업법제연구회(산업정책국장의 사적간담회)를 열어 이를 검토하고, 내년 봄에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공취위 등과 협의한 후에 1999년 정기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독금법의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독금법 위반인 불공정거래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공취위가 심사, 중지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연간 수천 건의 신고에 대하여 처리건수는 백 수십 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독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취위의 심결이 전제로 되어 있는 등 제약이 많다. 또한

중지청구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실적이 없다.

미국 및 독일에서는 손해배상과 중지를 합쳐 연간 수백 건의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독금당국의 처리를 보완하고 있다. 통산성은 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가 증대함과 동시에 감독관청의 분쟁조정력이 저하되면 불공정거래의 적발이 문제로 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공취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재판에서 구제를 구하는 사소제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업법제연에서는 기업·소비자가 불만스럽게 느끼는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를 한 후에 위반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카르텔, 부당염매 외에 끼워팔기, 우월적 지위의 남용, 거래거절 등이 중요한 대상으로 될 전망이다.

중지청구제도에 대하여서는, 현행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상품의 모방 등에 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지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든가, 독금법에 중지청구권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손해배상청구권

에 대하여서는, 공취위의 심결이 없어도 독금법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독금법을 개정하든가,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공취위가 협력하도록 하는 조직구성을 검토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수년간 일본정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소제도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소제도에 대하여서는 소송의 남발로 이어진다는 우려 이외에, 공취위를 우회하는 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취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금년 6월에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져, 「독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가 강하여진다」(林芳正 참의원위원)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취위의 根來위원장은 「연구하여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하여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97. 8. 25, 일본경제신문